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5월 31일 일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구매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입찰에 대한 일반적인 공고를 내지 않고 부재자 투표 신청서, 부재자 투표 용지, 봉투 또는 우편 등 기타 부재자 투표 신청서 또는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수단을 조달하고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일반 지자체법(General Municipal Law) 103 및 104-b항.
- 모든 일반, 유니언 프리, 중앙 및 중앙 고등 교육구의 연례 지역구 회의 및 선거를 비롯하여 주민이 125,000명 이하인 모든 시 교육구의 연례 회의의 일정인 2020년 5월 셋째 주 화요일을 이에 주 전역의 선거일로 예정된 2020년 6월 9일까지 휴정 및 재조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Education Law) 1804, 1906, 2002, 2022, 2601-a항.
- 각 교육청의 교육 위원회 혹은 이사가 이러한 회의의 휴정에 대하여 연례 회의 고지가 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갖춘 유권자에게 통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2003, 2004, 2022, 2601-a항. 단, 의무적으로 두 번 통보하여야 하며, 첫 번째 통보가 선거 28일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통보가 연기된 예산 청문회에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렇게 연기된 회의는 원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은 부재자 투표 용지를 활용하여 그러한 연기된 선거에 투표하며, 부재자 투표 용지는 각 교육구의 모든 자격을 갖춘 유권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각 지역구는 선거일, 예산 청문회 시행일, 유효 유권자의 정의, 부재자 투표 용지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연기된 지역구 회의 또는 지역구 회의 및 선거는 모든 목적의 연례 회의 또는 연례 회의 겸 선거로 간주합니다.
- 보고서 카드를 뉴욕주 교육부(Education Department)에 연기된 회의일 18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교육부가 연기된 회의일의 7일 전인 2020년 6월 2일까지 전자적으로 규정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1608, 1716항.
- 교육법 2018-a 및 2018-b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축소 가능성이 임시 질병 수준으로 간주될 때까지 이에 임시 중단 및 개정합니다.
- 교육법 2018-a 및 2018-b항은 2020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될 모든 선거의 목적으로만 모든 유효 유권자에게 무료 반송 봉투와 함께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도록 요구하도록 수정됩니다.
- 후보자가 알파벳순으로 투표 용지에 기입되고 소규모 시 교육구의 투표 용지가 선거 30일 전에 도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2018, 2032, 2608항.

- 적용 가능 한 주거지 및 연령 의무 사항을 포함하여 투표 용지에 기재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무 사항을 개인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수적으로 서명해야 하는 한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2018 및 2608항.
- 교육구가 설립하고 그 지원을 받는 공립 도서관에 해당 조항에 따라 선거를 제공지 하도록 승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260항. 이러한 선거 및/또는 예산 투표는 교육구가 재조정된 부재자 투표의 절차와 연계하여 부재자 투표 용지를 통해 진행되거나 교육구의 부재자 투표 절차를 위해 작성된 지침을 독립적으로 준수합니다. 이러한 투표는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구 또는 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 이사회의 청원에 대해 만들어진 조항과 동일한 조항이 도서관 이사회의 청원에도 적용됩니다.
- 교육구의 예산 투표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부재자 투표용지에 대해 공공 또는 협동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학교 투표 기금 제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259(1)항.
- 교육법 259 및 260항은 202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될 도서관 선거에 대하여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 조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모든 유효 유권자에게 우송료 유급 반송 봉투와 함께 부재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 이에 개정됩니다.
- 2020년 9월 15일에 시행될 모든 빌리지 선거의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 명령에 따라 선거법(Election Law) 6 및 15조는 임시 중단되거나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3월, 4월, 5월, 6월 실시 예정인 모든 빌리지 선거는 2020년 9월 15일로 변경됩니다.
  - 2020년 9월 15일 실시 예정인 빌리지 선거에 대하여 본 행정 명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정당 후보 선정은 해당 정당의 장이 결정한 방식대로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당 간부회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2020년 8월 20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하며 간부회의의 선정 인증 및 거부 또는 승인의 모든 인증은 2020년 8월 22일까지 보고되고, 이러한 거부 인증이 일단 제출되면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2020년 9월 15일 이전으로 예정되었으나 현재 2020년 9월 15일에 실시될 빌리지 선거의 모든 독립적인 후보 선정은 향후 행정 명령에 의해 결정될 뉴욕 일시 중단(NY on Pause)의 연장 기간동안 연기됩니다.
  - 원래 2020년 3월, 4월, 5월, 6월로 예정되었고 본 행정 명령에 의해 선거 시기가 결정될 모든 빌리지 선거는 이러한 사전 선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동일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투표 용지가 이미 출력되었을 경우, 해당 투표용지는 원래 선거일이 표지되어 있지 않는 한 2020년 9월 15일 선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3월, 4월, 5월, 6월 선거 실시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선거법 및 빌리지법의 모든 조항은 2020년 9월 15일 선거일에 적용됩니다.
  - 2020년 9월 15일 실시되도록 일정을 조정된 선거에서 선출된 빌리지 공직자는 선거법 15-126항에 따라 빌리지 서기가 기입한 캔버스 선언문이 작성 완료 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이러한 공직자의 임기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된 선거에서 선출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일자에 종료합니다.
  - 행정 명령에 따라 연기되었으며 이러한 연기의 시점에 투표 접근성이 완벽하지 않은 모든 빌리지 선거는 2020년 9월 15일 선거에 투표 용지 접근성을 적용가능할 경우에만 실시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6월 23일 실시 예정이었던 예비 또는 특별 선거를 위해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를 보내도록 개정된 8-406항은 무료 반송용 봉투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 부재자 투표 용지 조사와 관련된 선거법 9-209항은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해 취소 및 일정이 조정된 선거에 대하여 이러한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요청한 유권자에게 발송된 부재자 투표용지가 다른 이유로 무효화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러한 유권자가 재조정된 선거일에 직접 투표하거나 이러한 유권자가 기타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부재자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유효표로 개표되도록 개정됩니다.
- 부재자 투표용지 표기와 관련된 선거법 8-410항은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될 선거에 대하여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에 독립적으로 마킹을 원하는 유권자가 사용가능한 선거 시스템을 그러한 시스템의 가용성이 각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조건으로 제공 및 유지하도록 개정됩니다.
- 선거법 16-108항은 모든 대법원 법관에게 선거일 선거 관련에 대한 문제를 청취하고 이러한 문제를 전화 또는 화상 회의로 청취 및 결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물리적 출석을 의무화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됩니다.
- 선거법 8-407항은 특정 시설에 거주하는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관이 선거법 8-407항에 기술된 시설에 참석 및/또는 방문하지 않고, 그리고 2020년 7월 1일 또는 이전에 실시될 예비 선거 또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시설 거주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4장 8조에 따라 기타 부재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면 전달 대신 이러한 시설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전달 또는 우편발송하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개정됩니다.

- 선거법 5-204항은 지역 개인 등록과 관련하여 선거장소에서 지역 개인 등록 모임이 2020년에 열리지 않도록 하는 범위까지 수정됩니다.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5월 31일 일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소방, 도서관, 하수도, 상수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선거 및/또는 예산 투표를 실시하는 지역구 및 특수 지역구는 2020년 9월 15일로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선정 청원을 위한 서명의 수집은 이에 향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되며, 해당 일정은 향후 행정 명령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단, 교육구가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도서관 지역구는 2020년 6월 9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법에 따라 회람 또는 제출되거나 선거법 6-138항에 따른 독립적인 선정 청원의 회람 또는 기타 특수 지역구 선거의 제품, 수집은 행정 명령 202.13호에 따라 향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연기되며 그 시점은 향후 행정 명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20년 3월에 연기되었거나 2020년 6월 16일 또는 2020년 9월 15일 이전에 실시될 예정인 모든 빌리지 선거는 이에 2020년 9월 15일로 다시 일정이 조정됩니다.
- 행정 명령 202.23호는 유효 및/또는 유효상태가 아니며 2020년 6월 23일 실시될 예비 또는 특수 선거에 투표할 자격을 갖춘 모든 유권자 중 6월 23일 특별 선거 또는 예비 선거 부재자 투표를 전화로 신청한 자가 무료 반송 봉투와 함께 부재자 투표용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단, 모든 유권자는 하나 이상의 투표 용지를 수령해서는 안 되며 투표용지를 받기 전 또는 수령 시점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전화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용지에 대한 전화 요청 기록을 보관하고,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하는 유권자를 대신하여 부재자 투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는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 절차의 미비로 인해 무효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20년 5월 1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